

해임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 [2심]	사건유형	공무원신분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
판결선고일	[2심]2019. 7. 12. 항소취하	비고	[1심]2019. 5. 31. 원고패소 *항소취하로 1심 판결 확정
사건개요	<p>○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① 부적절한 언행, ② 특수학급 에어컨 사용 제한, ③ 특수학급 예산 사용 제한, ④ 남학생용 화장실 사용, ⑤ 교직원 복무 및 초과근무 사용 제한, ⑥ 비민주적 학교 운영 등)를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2018. 2. 28.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p> <p>○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3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20. 제5징계사유(비민주적 학교운영) 기재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p>		
주 문	<p>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p>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이유	<p>○ 원고의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인정) - 제1-2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중 일부(불인정) - 제2-1징계사유: 특수학급 에어컨 사용 제한(인정) - 제2-2징계사유: 특수학급 예산 사용 제한(인정) - 제3징계사유: 남학생용 화장실 사용(인정) - 제4-1징계사유: 교직원 복무 사용 제한(인정) - 제4-2징계사유: 교직원 초과근무 사용 제한(인정) <p>○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는 일반 교원에 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모범 		

	<p>이 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사유들은 그 비위나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원고가 특수학급에 설치된 에어컨의 가동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일부 특수학급 학생들은 축 늘어지거나 사타구니 등 온몸에 땀띠가 나는 등의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그 비위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으로 ‘파면 또는 해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징계사유의 비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징계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징계로 원고를 해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원고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징계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여러 교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고, 특수학급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행정실 직원이나 특수학급 교사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동안 참작되어야 함. -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교원 지위를 박탈하는 무거운 징계처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의 확립이나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결 론</p>	<p>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p>